지평지성 뉴스레터
JIPYONG JISUNG NEWSLETTER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2년 9월 제 42호

▌최신 판례▐

[민사] 주권에 관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에 관한 질권설정방법과 그 대항요건

박영주 변호사 | 성보석 변호사

1. 사실관계 및 원고 청구의 내용

(1) A회사는 2002년 6월 24일 B회사에게 배정한 신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한 후 증권예탁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신주 1,3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그 주권을 '이 사건 주권'이라 함)를 포함한 1,363,455주(이하 '제1보호예수주식')의 주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보호예수약정을 체결하고, 그 주권을 결제원에 보호예수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02년 5월 28일 B회사에 대출하면서 B회사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권이 발행되어 보호예수되자, 원고와 B회사는 2002년 7월경 공동명의로 작성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A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무렵 질권설정계약서 및 승낙의뢰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3) B회사의 채권자인 피고는 2002년 10월 18일 B회사가 결제원에 예탁한 A회사 주식의 공유지분에 관해 가압류하였고, C증권회사는 결제원에 대해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호예수기간의 만료 후 결제원은 2003년 6월 24일 피공탁자를 'A, B회사, C증권회사'로 하여 제1보호예수주식의 주권을 공탁하였습니다.

(4)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권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항소심에서 'B회사가 주권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인 결제원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거나 그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질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방콕 | 자카르타 | 양곤
Copyright 2012 JIPYONG JISUNG All rights reserved.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도 B회사가 A회사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점유매개자인 A회사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A회사의 승낙을 얻음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이 사건 선행소송 항소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권의 공탁물출급청구 및 그 출급청구권의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가처분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후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후행소송의 제1, 2심법원은 이 사건 선행소송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 사건 후행소송은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6)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이 사건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이 사건과 같이 주권에 대한 간접점유가 계층적으로 발생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주권의 제2차 간접점유자인 B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 질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① 직접점유자인 결제원에 대하여 직접 그 양도통지를 하거나 제2차 간접점유자인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양도청구권 및 제1차 간접점유자인 A회사의 직접점유자인 결제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순차 양도하거나 그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② 단지 B회사가 A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권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법적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일치된 판례 또는 학설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①의 방법이 타당하다는 법적 견해를 신뢰함으로써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질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만큼,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방콕 | 자카르타 | 양곤
Copyright 2012 JIPYONG JISUNG All rights reserved.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대법원은 "기명주식의 약식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상법 제338조 제1항),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의 양도도 허용되고,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질권설정자가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려면,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자가 다시 타인에게 주권을 보관시킴으로써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최상위의 간접점유자인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면 충분하며, 직접점유자인 타인의 승낙이나 그에 대한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의 통지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 2심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위에서 본 법리와 대체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명시적인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그 직후 오히려 위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독자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한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부당한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의미

기명주식의 약식질은 질권설정의 합의 및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민법 제332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방콕 | 자카르타 | 양곤
Copyright 2012 JIPYONG JISUNG All rights reserved.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중첩적으로 점유매개관계가 이루어진 주식에 관하여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최상위 간접점유자인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에 대한 주식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그 점유매개자의 승낙 또는 그 점유매개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면 충분하고, 주식의 직접점유자의 승낙이나 직접점유자에 대한 질권설정자 또는 점유매개자의 통지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힌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방콕 | 자카르타 | 양곤
Copyright 2012 JIPYONG JISUNG All rights reserved.